

주민세비과세세대등에 대해 임시특별급부금 (10만엔/1세대) 의 안내

수급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

- 주민세비과세세대등에 대한 임시특별급부금 **(1세대당10만엔)** 은 주민세균등할비과세세대와 2021년1월이후에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가 급변한 세대를 지원하는 새로운 급부금입니다.
- 급부금 수급에는 **신청이 필요**합니다.

급부금의 지급액

1 세대당 **10만엔**

급부금의 지급 시기

네리마구가 확인서(또는 신청서)를 수리한 날 부터 3정도 걸립니다.

지급대상과 신청 유무

지급대상인 세대 (어느쪽이든 해당되는 세대)

세대 전원 2021년도
「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」
인 세대

2021년 1월 이후에 수입이 감소한 **「주민세비과세상당」**의 수입인 세대(가계급변세대)

네리마구에서 확인서를 보냅니다
(반송필요)

※일부 신청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

기준일 (2021년12월10일) 시점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구정촌에서 확인서가 송부됩니다.

상세 내용은 뒷면 「I」 로

신청이 필요합니다

신청시간 : 2022년9월30일 (금) 까지
신청시점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구정촌에 신청해 주십시오.

네리마구
신청서배부처

임시상담창구(본 청사1층아트룸)
종합 복지 사무소, 생활 서포트 센터
네리마구사회복지협의회(신네리마빌딩)등

상세 내용은 뒷면 「II」 로

지급 절차와 지급요건의 상세 내용은 뒷면을 확인해 주십시오.

급부금의 지급 절차

I 2021년도의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인 세대

기준일 시점에서 전 세대인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네리마구에 주거하신 경우

● 대상인 세대에는 네리마구에서 급부 내용과 확인 사항이 기재된 확인서가 송부됩니다.

● 내용물을 확인하여 네리마구로 **반송해 주십시오.**

【확인 사항】

- ① 기재된 급부금의 입금 구좌 정보에 오류가 없을 것
- ② 주민세가 과세된 분의 부양친족등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닐 것
- ③ 세대 중에 주민세과세인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



기준일 시점에 세대 중에 2021년 1월 2일 이후에 전입한 분이 있는 경우

● 2021년도의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인 사실을 네리마에서 전 주소지에 조회합니다. 확인 하는 대로 확인서를 송부합니다.



II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세대 전원이 비과세 상당인 세대 (가계 급변세대)

※ 주민세비과세 상당이란 세대전원의 각각 년수입 예상액 (2021년 1월 이후의 임의 1개월수입×12) 등이 구시정촌 균등할 비과세수준이하인 것을 말한다 (적용되는 한도액의 상세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)

(예) 주민세비과세인 연간 급여수입의 기준 독신일 경우 : 100만엔 이하 . 모·자(1인)인 경우 156만엔이하

● 급부금의 수급에는 **신청이 필요**합니다.

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, 첨부 서류와 함께 우송으로 제출해 주십시오

! 의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아닌 수입 감소에 의한 급부 신청은 부정 수급 (사기죄) 에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.

! 주민세비과세세대에 대한 임시특별급부금의 「후리코미사기」와 「개인 정보의 사기」에 주의하세요!

자택과 직장등에 네리마구나 국가 (의 직원)등을 가장한 수상한 전화나 우편물이 온 경우, 네리마구나 경찰서, 경찰상담전화 (#9110)에 연락해 주십시오.



최신 정보는 네리마구 HP를 확인해 주십시오.



문의처

제도에 대해...

내각부 주민세 비과세세대등에 대한 임시특별급부금 콜 센터

0120-526-145

접수 시간 9:00~20:00

지급 절차에 대해...

네리마구주민세비과세세대임시특별급부금 콜 센터

03-6479-7526

접수 시간 평일 9:00~17:00 (축휴일 제외)